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55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 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u>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u>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 ----- <u>해사법원의</u> ----- -----.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u>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u>	<삭 제>

현행	개정안
<u>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u>	

□ 현행법에서는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은 해상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상기업은 그 활동무대가 바다이기 때문에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¹⁾됨.

-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²⁾, 책임의 한도액³⁾, 책임제한을

1) 송옥렬, 상법강의 제12판, 2022년, p.369

2)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⁴⁾ 하였고(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⁵⁾).

□ 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 의결을
 전제로 책임제한사건이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이 법의

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3)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
 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
 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
 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
 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
 에 대하 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
 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 4)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②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공고·참가
 ·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 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제한사건 관할규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52호)은 전문법원으로 해사법원의 설치를 예정하고,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⁷⁾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제448호)
제28조의7(심판권) ① 해사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 가.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 나.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 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② 해사법원의 항소부는 해사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③ 해사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은 “해사법원”으로 본다.
-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52호)에서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된다면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에 따라 해사사건으로 규정된 책임제한사건은 해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이 법의 책임제한사건 관할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에 따라 해사법원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제한사건이 현행과 같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한다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⁸⁾ 및 심판권 규정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자들에게 관할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한편, 해사법원 설치 여부 및 설치 지역의 문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해사사건의 수요, 해상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재, 해사사건 수요자의 접근성 및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9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 회의에서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바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광대균의원 대표발의, 제448호)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상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있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